

### 3. 학생생활상담센터 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 본 기관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라 칭하고, 학생생활상담센터 기구 및 편제는 직제규정에 따른다. (2011.7.1.자구수정)(2016.4.25.소속변경)(2019.2.8.개정)(2021.6.22.개정)

제2조(목적) 학생생활상담센터는 학생이 겪고 있는 생활 전반에 관한 문제를 상담(개인·집단)과 심리검사를 통하여 이해하고 해결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움을 준다. 아울러 자기 이해를 높이고 지혜롭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어 보건복지분야에 종사하게 될 전문가의 활동에 요구되는 인격적, 영적 자질을 갖추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6.4.25.자구수정)(2019.2.8.개정)

제3조(업무) 학생생활상담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2019.2.8.개정)

1. 개인 및 집단상담
2. 고위기 학생들을 위한 대처 상담
3. 각종 심리검사의 실시와 분석
4. 집단지도 및 공개강좌
5. 진로지도 및 자료수집
6. 학생생활 실태조사 및 연구활동
7. 학생생활상담연구지 발간
8. 학생생활상담활동 성과분석 및 환류(2016.02.03. 신설)
9. 취·창업지원센터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와의 협력 및 연계업무(2018.1.31. 호 추가)
10. 기타 학생지도에 관계되는 연구 및 활동

####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4조(기구) 학생생활상담센터에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2019.2.8.개정)

1. 상담부(개인 및 집단상담, 각종 심리검사)
2. 연구부(조사·연구 및 출판)
3. 진로지도부(진로지도 및 정보수집)

제5조(임원) 학생생활상담센터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2019.2.8.개정)

1. 센터장 1명 (2019.4.24. 개정)
2. 운영위원 약간명
3. 상담원 약간명
4. 조교 약간명

제6조(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생활상담센터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016.4.25. 자구수정)(2019.2.8.개정)
2.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학생생활상담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2019.2.8.개정)

3. 상담원은 해당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한다. (2016.4.25. 자구수정)(2019.2.8.개정)

4. <삭제> (2019.2.8.개정)

제7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생활상담센터장은 학생생활상담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019.2.8.개정)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생활상담센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를 행한다. (2019.2.8.개정)
3. 상담원과 조교는 제3조의 업무에 종사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학생생활상담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019.2.8.개정)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며 교목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016.4.25.자구수정)(2019.2.8.개정)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2019.4.24. 호 추가)

제9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안
2. 규정 제정 및 폐기
3. 예산 및 결산
4. 기타 사항

제11조(고위기 학생을 위한 체계적 관리) ① 고위기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지도교수의 의뢰, 상담센터의 상담결과 등을 통해 파악한다. (2020.4.21. 개정)

② 위기 상황 발생 시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집을 요구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2020.4.21. 개정)

④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은 상황에 따라 위원장이 판단하여 선정한다.

⑤ 위기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자신 및 주변 인물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 고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 또는 그 학생의 학부모가 상담센터의 전문적인 개입을 거절한 경우 (2020.4.21. 개정)
3. 기타 위기 상황의 적절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제12조(고위기 학생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업무)

① 자신 및 주변 인물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대한 상황조사 및 중재

② 고위기 상황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중재

③ 기타 위기 상황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중재

제13조(고위기 학생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상담센터에 상담사례가 접수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020.4.21. 개정)

② 위기상황의 조사, 중재, 필요한 조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3장 재정 및 보고

제11조(재정) 학생생활상담센터의 재정은 교비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2019.2.8.개정)

제12조(예·결산 및 사업보고) 매 회계년도의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삭제> (2019.2.8.개정)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의 변경) 본 연구소 규정의 변경 및 해산결의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0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